

4월은 크리스천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다.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또한 부활로 인간의 소망을 갖게 하신 귀한 절기인 부활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사랑”을 깨닫고 생각하며, 삶으로 이어가야 하는 크리스천들의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을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윤리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계명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의 실천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며, 예수님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땅에서 낮은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에 어둠을 거두어 주시는 일을 하셨다.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난 사람을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왔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하며 무시하던 유대인이었다. 상인으로 사업을 하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시간은 귀한 것이다.

그런데 상인으로 길을 떠난 사마리아인 앞에 길에서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는 유대인을 보게 된 것이다. 민족적으로 보면 일본인과 한국인의 사이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이 유대인을 위해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그 수고에는 물질이 있다. 이 유대인을 맡기면서 치료비를 미리 선불로 지급하고, 혹시 부족하다면 돌아오는 길에 값을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그 수고에는 자신의 시간과 사업이 지체되는 손해도 있다. 또한 감정적인 부분을 건디는 인내심도 있다.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의 곁을 많은 사람들이 지나쳐 갔다. 고맙다고 말할 수 있고,

종교칼럼

차준만

간성감리교회 담임목사



나눔이 있는 따뜻한 사회

유대인의 가르침에 능한 사람들도 그 곁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과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지식으로만 전해지는 그들의 윤리의식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사회는 분명 선한 일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점점 더 외로운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고, 군중 속에서 고독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요즘 뉴스를 타고 있는 어느 유명한 모델이 남긴 글도 온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다는 것이다. 그 외로움이 그에게 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사회는 점점 더 발전하고, 살기는 더욱 편안해 지고 있으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넘쳐나고 있다. 그런데 그에 반하여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하는 사람의 숫자도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것일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경우도 많이 보인다. 문제는 실천이다.

아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는 만큼 살 수 있다. 하지만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나눔의 기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나눔을 통해 얻는 유익과 기쁨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작은 이익과 편안함을 위해 외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리면서 마음은 불편하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성은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기독교는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본성 속에는 사랑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출발점이며, 동시에 종착점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나눔이다. 우리는 나눔을 통해 기쁨을 누린다. 나눔이 주는 큰 기쁨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기심이 결국 나눔을 방해하고,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며,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일관하거나 사랑이 없는 나눔으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인간은 나눔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사회에 나눔이 풍성해 지는 것은 곧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우리의 삶은 콩 한 조각이라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정이 있는 삶이었다. 언제나 이웃과 함께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정감있는 민족이었다. 그 나눔을 통해 서로 버팀목이 되고, 때로는 건디게 하며, 힘을 주어서 삶의 어려운 풍

파를 헤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것이 우리 민족만의 특별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기적인 삶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서 나눔보다는 이기적인 만족을 찾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적인 삶이 어느 순간 시골 마을에까지 파고 들었다.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적으로 흐르도록 만들었다. 이 와중에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고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를 초래하게 하였다.

이 사회의 가장 중요한 치료의 방법은 나눔이다. 그것도 사랑을 전제로 한 나눔이다. 이 나눔이 이루어질 때 이 사회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나눔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며,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에게 사랑은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고, 인간은 사랑할 때 행복하고, 사랑을 나눌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 이 사랑으로 나누어지는 사회가 될 때 아마도 이 세상은 더욱 살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랑으로 어렵고 힘들어 눈물 흘리는 이웃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을 때 이 세상은 좀더 따뜻한 인간이 살만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눔에는 자기 과시와 자랑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따뜻한 나눔의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은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행복을 채워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함으로 서로를 바라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차준만 목사 약력

- 협성신학대학원 졸업(Th·M)
- 기아대책 고성지역회 이사
- 간성감리교회 담임 목사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수 뒤 잔금지급 거절 가능여부

문) 甲은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의 채권자 丙이 위 토지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잔금지급 기일은 다가오는데, 이러한 경우 甲이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때까지 잔금의 지급을 거절하여도 되는지요?

답) 「민법」제536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부동산의 매매계

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도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가압류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도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

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매매목적 부동산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매매계약에 비하여 소유권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甲은 乙이 위 가압류의 말소의무를 해줄 때까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가압류를 해제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위 가압류가 해제되어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때까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매매

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받을 수 있는 자가 그 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여 줄 수가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를 해제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는 것까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가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은 매매잔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